

©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715-7089호

시행일자 2017. 10. 19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7722호(2017. 10. 17.)

3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제28395호)이 2017년 10월 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온 바, 이를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※ 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
(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)